

청주지방법원 2020. 7. 10 선고 2019나1659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0. 7. 10 선고 2019나16599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19. 10. 24 선고 2018가단3344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C

변론종결 2020. 6. 26.

판결 선고 2020. 7. 10.

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. 10. 24. 선고 2018가단3344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9,042,347원과 그 중 83,700,000원에 대하여는 2018.

8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, 그 중 13,95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동일하고,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지상목

판사고진흥

판사조정민